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893
----------	------

제출연월일 : 2020. 7. 14.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시하는”을 “개시하려는”으로, “폐업하는”을 “폐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

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업한”을 “폐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8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p> <p>2.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p> <p>3.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p>	<p>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p>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p>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 개시
하려는 -----

----- 폐업하려는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

----- 폐
업하려는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

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
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
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
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략)

② ③ (생략)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
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
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

-----.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

-----.

-----.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⑦ 제6항-----
----- 받으려는 -----

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5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야 한다.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p>1. <u>제7조제3항</u>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p> <p>2. ~ 9.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u>제11조제3항</u>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p> <p>2의2. ~ 5. (생략)</p> <p>④ ~ ⑦ (생략)</p>	<p>1. <u>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1조제4항</u> ----- -----</p> <p>2의2.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	--